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 898호 2012. 8. 21(화)

## ◀ 입법예고 ▶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325호) ..... 2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329호) ..... 11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2-1330호) ..... 18
-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340호) ..... 38
-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8호) ..... 45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9호) ..... 50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20호) ..... 58

## ◀ 고 시 ▶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2-73호) ..... 65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제2012-73호) ..... 70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2-74호) ..... 73

회 람									
--------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325호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포항시장 박승호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령」(2011. 08. 04, 2012. 01.26)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준용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변경(안 제4조)
- 위·수탁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안 제5조)
-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신설(안 제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3조의2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8월 16일 ~ 9월 1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9.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2926, FAX 054-270-2930, 이메일 y11022115@korea.kr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2. 8.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령」(2011. 08. 04, 2012. 01.26)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준용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변경(안 제4조)
- 위수탁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안 제5조)
-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신설(안 제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주소변경

3.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3조의2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4. 조례안 : 붙임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을 “제34조에 따라” 로 하고,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을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 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 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복지관” 을 “사회복지관”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령」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관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탁자의 사회복지관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관 시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5호 중 “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1조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 훈령」”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8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생략)</p> <p>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p> <p>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p> <p><b>제3조(명칭 및 위치)</b>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p> <p><b>제4조(복지관의 운영내용)</b> 복지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원</li> <li>2. 독서실</li> <li>3. 회의실</li> <li>4.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상담·교육</li> <li>5. 직업훈련지도 및 취업알선</li> </ol>	<p><b>제1조(목적)</b> ----- 제 34조에 따라 -----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p> <p><b>제2조(정의)</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li> <li>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li> </ol> <p><b>제3조(명칭 및 위치)</b> 사회복지관----- -----</p> <p><b>제4조(사회복지관 사업내용)</b> 사회복지관은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례관리기능</li> <li>2. 서비스제공기능</li> <li>3. 지역조직화기능</li> <li>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 욕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li> </ol>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6.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사업</p> <p><b>제5조(운영의 위탁)</b>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p> <p>1. 운영능력이 있는 자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생략)                  &lt;신설&gt;</p> <p><b>제6조(위수탁 협약)</b>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p> <p><b>제8조(수탁자의 의무)</b> ①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lt;삭제&gt;</p> <p><b>제5조(운영의 위탁)</b>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lt;삭제&gt;                  &lt;삭제&gt;                  &lt;삭제&gt;</p> <p>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령」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b>제6조(위수탁 협약)</b> 제5조에 따른                  -----                  -----                  -----</p> <p><b>제8조(수탁자의 의무)</b> ① ---사회복지관 시설-----                  -----                  ② 수탁자의 사회복지관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관 시설-----                  -----                  -----                  -----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위탁의 취소)</b>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li> <li>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li> <li>3. ~ 4. (생략)</li> <li>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li> <li>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li> </ol>	<p><b>제9조(위탁의 취소)</b> ----- 각호의 어느 하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제5조제1항에 따른-----</li> <li>2. -----제8조에 따른-----</li> <li>3. ~ 4. (현행과 같음)</li> <li>5. <u>사회복지관</u>-----</li> <li>6.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li> </ol>																								
<p><b>제10조(감독)</b>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자는 시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10조(지도감독)</b>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b>제11조(준용규정)</b>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시행규칙」 및 「보건복지가족부 훈령」등을 따른다.</p>	<p><b>제11조(준용규정)</b> -----</p> <p>-----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p>																								
<p><b>【별표】</b>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p>	<p><b>【별표】</b>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소재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포항종합사회복지관</td> <td>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번지</td> <td></td> </tr> <tr> <td>창포종합사회복지관</td> <td>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번지</td> <td></td> </tr> <tr> <td>학산종합사회복지관</td> <td>포항시 북구 학산동 346번지</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번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번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학산동 346번지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소재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포항종합사회복지관</td> <td>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1</td> <td></td> </tr> <tr> <td>창포종합사회복지관</td> <td>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8</td> <td></td> </tr> <tr> <td>학산종합사회복지관</td> <td>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8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	
명칭	소재지	비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번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번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학산동 346번지																								
명칭	소재지	비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8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																								

포항시 공고 제2012-1329호

## 공 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물 사용 요금표 중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복지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15조, 별표)
  - 운동장(기본2시간) : 20,000원, 수강료 : 월 5,000원

-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복지관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관련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8월 17일 ~ 9월 1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4773, FAX 054-278-4498, 이메일 jsh3008@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 교양, 경제, 문화 등 생활 편의 증진사업
2.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 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경우
-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7.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복지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관리를 위탁운영 시켰을 경우
- 2. 국가 또는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 4.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 ②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서의 열람과 대출)** 복지관 내의 도서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서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복지관의 도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도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강사)** ① 시장은 복지관의 취미교실 및 각종 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회저명인사, 외래전문인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①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 수강 신청자는 별표의 수강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사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지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수강료)

구 분		이용기준	요 금	비 고
대강당		1회 2시간 이내	40,000원	·초과시 1시간당 10,000원을 추가한다. ·냉난방비:10,000원/시간
회의실	근로자종합복지관	1회 2시간 이내	10,000원	초과시 1시간당 5,000원을 추가한다.
	노동복지회관(분관)	1회 2시간 이내	10,000원	초과시 1시간당 5,000원을 추가한다.
목욕탕		1회	·대인 1,500원 ·소인 1,000원	
운동장		1회 2시간	20,000원	초과시 1시간당 10,000원을 추가한다.
수강료		1인 1월	5,000원	기별로 징수한다.
체력단련실		1회	1,000원	
		월 회원	20,000원	

포항시 공고 제2012-1330호

# 공 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물 사용 요금표 중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예법실, 이용실 등) 폐지

- 사용허가 권자 변경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장” → “포항시장”
- 도서 대출에 관한 규정 마련
- 별표 및 별지 서식 변경

**3. 관련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8월 17일 ~ 9월 10일**

**6.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4773, FAX 054-278-4498, 이메일 jsh3008@korea.kr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교육수강신청)** ①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 강좌 수강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술교실 및 취미·교양 등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대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대출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9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종자료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배상)** ① 도서자료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 도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시설

시설명	운영시설	비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본관)	1. 사무실 2. 체력단련실, 생활체육실, 탁구장, 당구장 3.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4.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컴퓨터실, 독서실 5.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노동복지회관 (분관)	1. 사무실 2. 구판장 3. 목욕탕 4. 회의실 5.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 휴관일 : 설(신정, 구정). 추석 연휴 기간 및 국가공휴일, 일요일  
(단, 수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간

구분		사용시간	비고
체육시설	운동장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08:00 ~ 19:00 (평일, 토요일 구분없음)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기타시설	목욕탕	06:30 ~ 19:00(매주화요일 휴무)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생활체육실 독서실 컴퓨터실 기능실습장 상담실 휴게실	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참석인원		
사용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앞 쪽)

허가번호

사용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시설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참석인원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사용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뒤 쪽)

공지사항

1. 본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복지관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6.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최초 사용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입치 아니할 경우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    유		
변경·취소전		
변경·취소후		

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강 신청서

제 호

신청인	신청과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20 년 기( 교실)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수강 신청 접수증

제 호

신청인	신청과목	
	성명	생년월일

위와 같이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 수료증

- 1. 성 명 :
- 2. 생년월일 :
- 3. 주 소 :
- 4. 수강과목 :

위의 사람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설한 강좌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시설 사용료 감액·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시설		
행사명칭		
참석인원		
행사내용 (지면 부족시 별지이용)		
면제신청사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사용료 반환 청구서

년도			납부연월일	납부금액	산출내역	반환금액
관	항	목				
납부자			성명(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			
			반환사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또는 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일반회원 (성인, 중고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회원번호

어린이회원 (성인, 중고생)	성명(어린이)	생년월일(어린이)
	주소	전화번호
	성명(보호자)	생년월일(보호자)

회원번호

재발급회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위와 같이 자료대출회원으로 가입코자 (  신규발급    )  
(  재 발 급    ) 신청합니다.

신 분 증 대 조 확 인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공지사항

1. 본인은 도서실의 도서·자료대출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대출받은 도서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3. 대출도서의 지정된 반납 기일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4. 자료 대출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소 및 신분대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대출권수는 1인 5권이내 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5일간입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도서반납 독촉장

대출인	성명	
	주소	
대출도서	등록번호	도서명
	대출일	반납예정일

귀하께서 대출받으신 위의 도서는 반납예정일이 장기간 경과하여 다른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문의사항

- 1. 부서명 :
- 2. 전화번호 :
- 3. 담당자 :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도서 분실 훼손 확인서

회원번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분실 및 훼손내용	등록번호	도서명
	가격	경위(육하원칙)
변상 방법	현금	
	현물	

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포항시 공고 제2012-1340호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장 박승호

##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물의 허가·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에 대한 실시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사전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마. 사전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사. 심의위원, 사전점검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9조)

### 3.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4. 제정조례 안 : 불 입

###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70-2972, FAX 270-2920)

나. 제출기관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우 790-722)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다. 제출서식

□ 조례명 :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전점검요원 구성)** ① 사전점검요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 2. 편의시설 지원센터요원
-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 4. 장애인·노인·여성복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12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레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 점검업무에서 제척된다.

1. 사전점검요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

2. 사전점검요원이 시설주와 친족관계 및 사전점검요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공사·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요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사전점검요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점검요원의 해촉)** ① 제10조에 따른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7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심의위원 또는 사전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또는 사전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8호

# 공 고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후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의회의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시기 정함(안 제4조)

- 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정함(안 제6조)
- 마. 포항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대행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함(안 제9조)
- 바. 시장 등이 사후관리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8.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 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당해 년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출시기)**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 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포항시 의무 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9호

# 공 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투명성,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승인과 동의를 받도록 함.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 또는 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구체화 함(안 제8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 위원회는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토록 함.
- 라. 위탁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1조제2항)
- 마.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바. 수탁기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의무조항 규정(안 제15조)
- 사.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아.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1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8.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범위와 비용산출내역 등 해당 사무 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 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포항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⑧ 위원회는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심사
- 2.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사
- 3. 재계약 및 기간연장시 적정여부 심사
- 4.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사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위탁기간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 4.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를 위탁사무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 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5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수탁기관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한 때
-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시장은 위탁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위탁기간, 승인 및 동의를 포함한다)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0호

# 공 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의회의회장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포항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의 입법에 관한 목적 및 사용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방자치의 입법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따른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마. 자치법규의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 사. 규칙·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입법예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안 제19조)
- 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8.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포항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절차)**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에는 영 제28조의 규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

**제6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입법안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포항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4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8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훈령·예규·고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공포·발령·고시 즉시, 규칙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즉시(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항목 중 법령에서 직접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규칙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시장이 제출한 규칙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0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7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7 외 4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7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0	20091201	상공회의소를 지나는 도로로 상공회의 발전을 영원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5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안길 5	20091201	행정구역명(남성리)과 방향을 이용하여 남성안길로 명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5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조길 124-17	20120813	옛 지명(부조)을 이용하여 부조길로 명명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9번길 50-3	20091201	유강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6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길 56-11	20110630	행정구역명(중명리)을 이용하여 중명길로 명명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24-1, 832-1, 832, 83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1690번길 5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42-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7번길 33-2	20091201	해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5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한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20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로7번길 16	20091201	이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5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59번길 17-8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42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1287번길 35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40번길 20-2	20091201	문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40번길 20-1	20091201	문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414-1, 441-4, 44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동길48번길 14-16	20091201	유동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15번길 27-10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43번길 9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93번길 21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20	20091201	기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20-1	20091201	기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881-56	20091201	기계면과 축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문화로 16-7	20091201	옛 문화원을 지나는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3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곡로 39	20091201	큰 골짜기 라는 뜻의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진길 151	20091201	행정구역명(대진리)을 이용하여 대진길로 명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45번길 19-6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2-22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74번길 25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39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34-20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61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262번길 23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계면 현내리 9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583번길 5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6블럭 3롯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30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 명명
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13-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1번길 27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22-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5번길 19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8번길 38-1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1-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7번길 44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70-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8번길 64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12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952-1	20091201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4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석길 291-12	20091201	합덕과 석계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글자를 따서 합석길로 명명
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858-1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3622번길 9-1	20091201	새마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3-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산길 99-6	20111031	청하의 안산인 용산 남쪽자락을 따라 형성된 길로 옛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6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106번길 42	20091201	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13, 213-1, 220-15, 220-9, 22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민대로 905	20091201	해와 달의 고장인 아름다운 도시 포항의 영일만을 이용한 도로명
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21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81번길 17	20091201	흥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11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 134	20091201	용연저수지를 향하는 길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827번길 25	20091201	도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2-73 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7번길 33-2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 지번주소	변경후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902-46	좌동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7번길 31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07번길 33-2	2012.08.06	건물번호중복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2						
3						
4						
5						
6						
7						
8						
9						
10						

포항시 고시 제2012-74호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1번지 외 5필지 지방하천(냉천)내에 광명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오수관로 설치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항시장 박승호

####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m <sup>2</sup> )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냉천 (지방 하천)	오천읍 문덕리	1188-1번지 외 5필지	관로 매설	1,603	441	2012. 8. 20 ~ 2013. 12. 31	허가 일부 영구	한국자산신탁( 주) 대표 심형구	